

<붙임 1>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운영세칙 개정(안)

1. 개정 목적

-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(서울특별시규칙 제3477호, 2016.4.7. 시행)에 따른 세칙 개정
-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장을 이전해야하는 임차상인이 상가를 직접 소유(자산화) 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에 필요한 근거 마련
-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지원 시설자금의 현장 지원 강화로 시설자금 상품성 제고
- 시설자금 전결권 금액 확대로 자금지원의 효율성 강화

2. 기대 효과

- 소상공인 사업장 자산화로 임대료 급등 피해 없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
- 고객 접근이 용이한 영업점 중심의 시설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
- 시설자금 추천 업무 지점이양으로 자금지원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모니터링, 정보네트워크 강화 등 정책자금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
- 시설자금 신속지원 위한 정책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극대화

3. 주요 내용

- ① 「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세칙」
 - 제2조(심의대상)제10호중 “10억원을 초과하는 다음의 대상사업”에 자산화사업 추가
- ② 「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」
 - 제3조(용어의 정의) 및 제9조(융자대상업체결정)제2항에 자산화사업을 신설하고, 시설자금 융자지원금액 결정기준 등에 자산화사업 추가(별표1,5)
 - 지원사업별·금액별 전결권 및 융자심의위원회 부의여부 구분중 지식산업센터·벤처기업·산업단지 입주지원사업에 대한 영업점 지점장 전결권 추가, 시설자금 융자 승인 금액에 대한 팀장 전결권을 5억원에서 8억원 이하로 확대(별표5)

신 · 구 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 관한 운영세칙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조 --(기재생략)--</p> <p>제2조(심의대상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한다.</p> <p>1호~9호 --(기재생략)--</p> <p>10. 10억원을 초과하는 다음의 대상사업</p> <p>가. 공장용지임대사업</p> <p>나.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</p> <p>다. 외국인투자기업지원사업</p> <p>라.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1조 --(현행과 같음)--</p> <p>제2조(심의대상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한다.</p> <p>1호~9호 --(기재생략)--</p> <p>10. 10억원을 초과하는 다음의 대상사업</p> <p>가. 공장용지임대사업</p> <p>나. 공장 및 사업장 설치사업</p> <p>다. 외국인투자기업지원사업</p> <p>라.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</p> <p style="color: red; text-decoration: underline;">마. 자산화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부 칙(12)</p> <p><u>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시설자금지원사업에 관한 운영세칙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장 총 칙</p> <p>제1조~제2조 --(기재생략)-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운영세칙에서 시설자금이라 함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. 1호~15호 --(기재생략)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용자지원대상 및 조건</p> <p>제4조~제5조 --(기재생략)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용자지원결정방법</p> <p>제6조~제8조 --(기재생략)-- 제9조(용자대상업체결정) ① --(기재생략)--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에 의해 평가하여 용자대상업체로 결정할수 있다. 1. 1차 평가기준항목만 평가(기준항목 모두 충족) 가~바. --(기재생략)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 설)</p>	<p>제1장 총 칙</p> <p>제1조~제2조 --(현행과 같음)-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운영세칙에서 시설자금이라 함은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. 1호~15호 --(현행과 같음)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6. 자산화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2장 용자지원대상 및 조건</p> <p>제4조~제5조 --(현행과 같음)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용자지원결정방법</p> <p>제6조~제8조 --(현행과 같음)-- 제9조(용자대상업체결정) ① --(현행과 같음)--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에 의해 평가하여 용자대상업체로 결정할수 있다. 1. 1차 평가기준항목만 평가(기준항목 모두 충족) 가~바. --(현행과 같음)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. 자산화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(12)</p> <p><u>이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현 행				개 정 (안)					
[별표 1]				[별표 1]					
지원사업명	용자지원범위	금액결정기준		지원대상	용자지원범위	금액결정기준			
(생략)	(생략)	(생략)		(신설) 6. 자산화사업	매입에 필요한 자금 (직접 사업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지원)	계약서상의 매매· 분양금액과 최근 3년 이내의 금융회사 나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액 중 저가의 금액을 산정			
6. 기타사업	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시설자금 용자대상의 선정요건 및 용자범위와 상기 1호 내지 5호까지의 내용에 준함					7. 기타사업	조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시설자금 용자대상의 선정요건 및 용자범위와 상기 1호 내지 5호까지의 내용에 준함		
[별표5]				[별표5]					
지원사업별·금액별 전결권 및 용자심의위원회 부의여부 구분				지원사업별·금액별 전결권 및 용자심의위원회 부의여부 구분					
구분	결정 기준			용자심의 위원회부의	구분	결정 기준			용자심의 위원회부의
	영업점 지점장	본점 담당 부서장	상임이사			영업점 지점장	본점 담당 부서장	상임이사	
--(기재생략)--				--(기재생략)--					
(신설)				○ 입지지원사업					
				(신설) - 자산화사업					
				10억원 이하					
				10억원 초과					
--(기재생략)--				--(기재생략)--					

현 행					개 정 (안)				
[별표5] 지원사업별·금액별 전결권 및 용자심의위원회 부의여부 구분					[별표5] 지원사업별·금액별 전결권 및 용자심의위원회 부의여부 구분				
구 분	결 정 기 준			용자심의 위원회 부의	구 분	결 정 기 준			용자심의 위원회 부의
	영업점	본점	상임 이사			영업점	본점	상임 이사	
	지점장	담당 부서장				지점장	담당 부서장		
--(기재생략)--					--(기재생략)--				
○ 입지지원사업					○ 입지지원사업				
-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·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사업			○	○	-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·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설치사업			○	○
-지식산업센터· 벤처기업·산업단지 입주지원사업		○			-지식산업센터· 벤처기업·산업단지 입주지원사업	○	○		
--(기재생략)--					--(기재생략)--				
※ 용자 승인할 금액(기지원금액 포함)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팀장이 결정한다. (단, 용자심의위원회 부의건은 제외)					※ 용자 승인할 금액(기지원금액 포함)이 8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팀장이 결정한다. (단, 용자심의위원회 부의건은 제외)				